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¹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용으로 차량에 물품을 넣어서 세워만 놓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면 폐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상운행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하는게 당연하나, 매연을 발생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행하지 않아 주행거리가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 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업

소 입·출고확인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번호판 영치 등 사용을 할 수 없는 근거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²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은?

당사에서는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해 금년 12월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기 인허가는 2015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증설 시설 중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시 2015년 1월 1일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A

'15.1.1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항 나목에 의해 가스나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로이 포함됩니다. 동 별표에서는 기존부터 운영되던 시설이 2015.1.1부터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될 경우 2015.12.31까지 관할 지자체(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는 해당 기존시설의 입지에 적용할 경과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 별표의 일부 시설은 설치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 다소 상이하게 설정되었고,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2015.1.10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14.12.31 현재 타 법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일러는 2014.12.31이전 설치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2014.12.31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득한 시설의 설치계획에 포함된 보일러에 한하여 2014.12.31 이전 설치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4년 허가를 득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9호에 의해 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허가받은 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³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유기용제를 시제품 Test 에 사용하고자 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Test 가 끝나고 그 남은 원료를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저희 사업장은 전남에 있고, 원료 보관창고는 경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중 어느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는 폐기물 배출지를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⁴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을 할때 용도변경되

는 부분 또는 증축되는 부분만 현행법규에 따른 산정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해 현행법규에 산정식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A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제2013-6호)의 산정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이 별도의 건물에서 이뤄진다면 용도변경 또는 증축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고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기존 오수량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⁵ 환경기술인 선임은?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150톤/일(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로 4종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발생한 폐수는 전량 공동방지시설(타 업체)을 거쳐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법률 시행령 59조 2에 의거 4종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 하였으나

별표 17. 비고2 관련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한 사업장은 3종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고 5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3종 사업장은 4.5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라고 하는데 최종 4.5종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두면 되는 건가요?

또한 3종사업장 환경기술인 중 자격증 없이 수질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한 종사자면 가능한가요?

A 발생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17] 비고6의 규정에 따라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이면 가능합니다.